

수원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2024가단5424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4. 9. 3.

판 결 선 고 2024. 10. 15.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6.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 주식회사에게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2022. 7. 15. 접수 제5518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주식회사에 대하여 2억 원 및 지연손해금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C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한 상황에서 2022. 6. 16.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6. 16.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2. 7. 15.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 주식회사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이 C 주식회사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C 주식회사가 무자력 상태에 이르렀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예비적 판단

을 1 내지 5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피고가 진정한 목적을 가지고 일반적인 매물 물색 및 교섭 과정 등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 등 C 주식회사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용희

별지